

---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3년 12월 2일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상 수**

## 목 차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마포구 2014년 예산 편성 현황	1
III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현황	3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3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4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5
	④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	7
IV	검토의견	10

### ◆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1

#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I 제안 개요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11.15(금) 마포구청장
-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3.11.19(화)
-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 II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 1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

#### 1. 재정전망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상존하며, 보조금 수입 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사업비와 선거비용,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

#### 2. 예산편성 방향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 확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과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함

## 2. 세입·세출예산(안)

### 1.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비 고
총 계	432,265	371,524	60,741	16.4%	
일 반 회 계	366,237	321,734	44,503	13.8%	
특 별 회 계	66,028	49,790	16,238	32.6%	
의료보호기금	412	409	3	0.6%	
농수산물시장	6,975	5,274	1,701	32.3%	
주 차 장	58,641	44,106	14,535	33.0%	

###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계	366,237	321,734	44,503	13.8%	계	366,237	321,734	44,503	13.8%
지방세	78,228	77,637	591	0.8%	인건비	81,212	82,134	△922	△1.1%
세외수입	41,907	41,483	424	1.0%	물건비	33,834	33,167	667	2.0%
지방교부세	3,950	4,491	△541	△12.1%	경상이전	218,667	179,712	38,955	21.7%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60,580	56,713	3,866	6.8%	자본지출	27,805	23,063	4,742	20.6%
보 조 금	145,709	112,120	33,589	30.0%	내부거래	888	670	218	32.6%
보전수입 등	35,864	29,290	6,574	22.4%	예비비등	3,832	2,989	843	28.2%

###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계	66,028	49,790	16,238	32.6%	계	66,028	49,790	16,238	32.6%
세외수입	18,952	19,827	△875	△4.4%	인건비	2,131	2,180	△49	△2.3%
					물건비	1,456	1,681	△225	△13.4%
					경상이전	9,712	9,234	477	5.2%
보 조 금	412	404	8	1.8%	자본지출	6,272	1,457	4,814	330.3%
					융자및출자	3	503	△500	△99.4%
보전수입 등	46,664	29,559	17,105	57.9%	내부거래	14,539	0	14,539	순증
					예비비등	31,916	34,734	△2,818	△8.1%

### III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 1 세입·세출 총괄 현황

##### 1.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80,549,043	52,014,958	28,534,085	54.9%
일반회계	21,908,043	7,908,522	13,999,521	177.0%
특별회계	58,641,000	44,106,436	14,534,564	33%

##### 2.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74,592,135	59,010,122	15,582,013	26.4%
일반회계	15,951,135	14,903,686	1,047,449	7.0%
특별회계	58,641,000	44,106,436	14,534,564	33%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805억 4,9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억 1,495만 8천원 대비 54.9%인 285억 3,408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예산의 18.6%에 해당하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대폭 증가 주요 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세출예산은 745억 9,2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0억 1,012만 2천원 대비 26.41%인 155억 8,20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음(2013.1.1 조직개편으로 지적과가 건설교통국에 편입)

## 2 일반회계 세입현황

### 1. 세입과목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21,908,043	7,908,522	13,999,521	177.0%
세외수입	7,358,754	7,866,678	△507,924	△6.5%
경상적세외수입	4,638,735	4,330,527	308,208	7.1%
재산임대수입	23,661	23,419	242	1.0%
사용료수입	2,501,487	2,282,565	218,922	9.6%
징수교부금수입	2,113,587	2,024,543	89,044	4.4%
임시적세외수입	2,720,019	3,536,151	△816,132	△23.0%
기타수입	1,142,000	1,369,593	△227,593	△16.6%
지난연도수입	1,578,019	2,166,558	△588,539	△27.2%
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	10,400	41,844	△31,444	△7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입금)	14,538,889	0	14,538,889	순증

### 2.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21,908,043	7,908,522	13,999,521	177.0%
교통행정과	2,526,053	3,141,354	△615,301	△19.6%
교통지도과	14,568,929	34,468	14,534,461	42,168.0%
건설관리과	4,275,000	4,180,437	94,563	2.3%
토목과	184,000	174,000	10,000	5.8%
치수과	34,061	65,263	△31,202	△47.8%
지적과	320,000	313,000	7,000	2.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 8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852만 2천원 대비 177%인 139억 9,952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3억 5,87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92만 4천원(6.5%)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20만 8천원(7.1%)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1,613만 2천원(23.0%)이 감소. 보조금은 3,144만 4천원(75.2%)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45억 3,88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3 일반회계 세출현황

#### 1. 부문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부문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Δ)감	증감률
<b>총 계</b>	<b>15,951,135</b>	<b>14,903,686</b>	<b>1,047,449</b>	<b>7.0%</b>
일반공공행정	67,270	250,060	△182,790	△73.1%
공공질서및안전	2,198,512	2,506,034	△307,522	△12.3%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2,597,828	2,814,863	△217,035	△7.7%
수송및교통	8,381,238	6,970,711	1,410,527	20.2%
국토및지역개발	263,853	310,022	△46,169	△14.9%
기타	2,442,434	2,051,996	390,438	19.0%

#### 2. 부서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부서(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Δ)감	증감률
<b>합 계</b>	<b>15,951,135</b>	<b>14,903,686</b>	<b>1,047,449</b>	<b>7.0%</b>
<b>교통행정과</b>	<b>841,146</b>	<b>842,506</b>	<b>△1,360</b>	<b>△0.2%</b>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171,167	167,457	3,710	2.2%
교통수요 관리	80,354	75,385	4,969	6.6%
교통시설물 관리	41,100	41,100	0	0.0%
체납징수활동 강화	188,708	192,033	△3,325	△1.7%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9,550	9,550	0	0.0%
기본경비	196,753	196,933	△180	△0.1%
인력운영비	153,514	160,048	△6,534	△4.1%
<b>교통지도과</b>	<b>68,912</b>	<b>67,112</b>	<b>1,800</b>	<b>2.7%</b>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28,592	26,792	1,800	6.7%
기본경비	40,320	40,320	0	0.0%
<b>건설관리과</b>	<b>326,396</b>	<b>1,021,839</b>	<b>△695,443</b>	<b>△68.1%</b>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57,720	240,510	△182,790	△76.0%
가로환경정비	122,072	120,756	1,316	1.1%
손실보상업무	6,884	520,523	△513,639	△98.7%
기본경비	139,720	140,050	△330	△0.2%
<b>토목과</b>	<b>8,720,382</b>	<b>6,728,114</b>	<b>1,992,268</b>	<b>29.6%</b>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및 매수	1,896,000	0	1,896,000	순증
도로정비공사	3,027,812	3,022,603	5,209	0.2%
불량맨홀 정비	150,000	150,000	0	0.0%

도로제설 유지	356,041	334,082	21,959	6.6%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26,324	21,327	4,997	23.4%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2,408,256	2,419,409	△11,153	△0.5%
인력운영비	680,252	619,261	60,991	9.9%
기본경비	175,697	161,432	14,265	8.8%
<b>치수과</b>	<b>5,712,711</b>	<b>5,915,042</b>	<b>△202,331</b>	<b>△3.4%</b>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	1,154,000	1,554,000	△400,000	△25.7%
하수시설 긴급복구	1,443,828	1,260,863	182,965	14.5%
수방대비 체계확립	159,500	70,030	89,470	127.8%
하천 및 유수지 관리	349,472	496,048	△146,576	△29.6%
빗물펌프장 운영	1,634,100	1,621,748	12,352	0.8%
수문정밀점검	10,000	219,000	△209,000	△95.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20,800	83,688	△62,888	△75.2%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24,640	15,520	9,120	58.8%
인력운영비	676,214	356,720	319,494	89.6%
기본경비	240,157	237,425	2,732	1.2%
<b>지적과</b>	<b>281,588</b>	<b>329,073</b>	<b>△47,485</b>	<b>△14.4%</b>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51,121	50,393	728	1.4%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4,400	8,800	△4,400	△50.0%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1,440	1,440	0	0.0%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12,717	47,871	△35,154	△73.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3,280	3,700	△420	△11.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344	1,200	144	1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8,437	64,364	△5,927	△9.2%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9,042	11,498	△2,456	△21.4%
기본경비	139,807	139,807	0	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5,11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744만 9천원(7.0%)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편성 내역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 ▶ **교통행정과는** 8억 4,114만 6천원으로, 136만원(0.2%) 감소
  - ▶ **교통지도과는** 6,891만 2천원으로, 180만원(2.7%) 증가
  - ▶ **건설관리과는** 3억 2,639만 6천원으로, 6억 9,544만 3천원(68.1%)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1억 7,645만원과 미불용지보상금 5억 1,363만 9천원임.



- ▶ 토목과는 87억 2,038만 2천원으로, 29.6%인 19억 9,22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경의선 서강역 주변 도로개설 사업 16억원과 창전동 150-26 토지보상비 2억 9,600만원임.
- ▶ 치수과는 57억 1,271만 1천원으로, 3.4%인 2억 233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예산 2억원과 수문정밀점검 용역비는 대상 감소(2013년 12개→2014년 1개)로 2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인부 정년퇴직(2명)에 따라 퇴직금 3억을 증액 편성함.
- ▶ 지적과는 2억 8,158만 8천원으로, 14.4%인 4,748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 4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

##### 1.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Δ)감	증감률
총 계	58,641,000	44,106,436	14,534,564	33%
세외수입	14,579,968	15,606,436	Δ1,026,468	Δ6.6%
경상적세외수입	8,359,246	8,249,688	109,558	1.3%
사업수입	7,559,246	7,449,688	109,558	1.5%
이자수입	800,000	800,000	0	0.0%
임시적세외수입	6,220,722	7,356,748	Δ1,136,026	Δ15.4%
기타수입	3,117,270	3,567,181	Δ449,911	Δ12.6%
지난연도수입	3,103,452	3,789,567	Δ686,115	Δ1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061,032	28,500,000	15,561,032	54.6%

-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8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인 145억 3,456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 ▶ 세외수입은 145억 7,99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646만 8천원 감소
    - 거주자 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305만 5천원이 증가한 72억 8,080만 6천원이며,
    - 불법주정차 견인료와 견인차량 보관료 등은 2,349만 7천원 감소한 2억 7,844만원을 편성함

- ▶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 2,07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602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 과태료 수입은 3억 4,720만원이 감소한 31억 880만원
  - 지난 년도 수입(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선)은 6억 8,611만 5천원이 감소한 31억 345만 2천원을 편성함
- ▶ 순세계 잉여금은 440억 6,103만 2천원으로 155억 6,103만 2천원이 증가함

## 2. 세출 현황

###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b>총 계</b>	<b>58,641,000</b>	<b>44,106,436</b>	<b>14,534,564</b>	<b>33%</b>
<b>교통행정과</b>	<b>34,671,216</b>	<b>34,628,793</b>	<b>42,423</b>	<b>0.1%</b>
자전거 이용 활성화	278,100	282,860	△4,760	△1.7%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234,567	276,227	△41,660	△15.0%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3,915	223,676	30,239	13.5%
예비비	28,984,634	33,846,030	△4,861,396	△14.4%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4,920,000	0	4,920,000	순증
<b>교통지도과</b>	<b>23,969,784</b>	<b>9,477,643</b>	<b>14,492,141</b>	<b>152.9%</b>
불법 주정차 단속	1,013,281	764,726	248,555	32.5%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748,924	903,972	△155,048	△17.2%
주차장 관리	322,470	737,047	△414,577	△56.3%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4,339	5,941	△1,602	△27.0%
인력운영비	2,463,800	2,515,970	△52,170	△2.1%
기본경비	196,018	191,113	4,905	2.6%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682,063	4,358,874	323,189	7.4%
기타회계전출금	14,538,889	0	14,538,889	순증

나. 성질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총 계	58,641,000	44,106,436	14,534,564	33%
인건비	2,063,728	2,112,089	△48,361	△2.3%
물건비	1,442,615	1,675,303	△232,688	△13.9%
일반운영비	1,234,255	1,366,839	△132,584	△9.7%
여비	117,600	114,240	3,360	2.9%
업무추진비	18,640	18,160	480	2.6%
직무수행경비	72,120	75,840	△3,720	△4.9%
경상이전	5,342,542	5,015,605	326,937	6.5%
일반보상금	95,930	97,219	△1,289	△1.3%
포상금	288,352	285,062	3,290	1.2%
연금부담금등	276,197	274,450	1,747	0.6%
전출금	4,682,063	4,358,874	323,189	7.4%
자본지출	6,268,592	1,457,409	4,811,183	330.1%
시설비및부대비	5,736,000	662,000	5,074,000	766.5%
민간자본이전	10,000	10,000	0	0%
자산취득비	522,592	785,409	△262,817	△33.5%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14,538,889	0	14,538,889	순증
예비비및기타(예비비)	28,984,634	33,846,030	△4,861,396	△14.4%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8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3,456만 4천원(33.0%)이 증가하였으며
  - ▶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4천 242만 3천원(0.1%) 증가한 346억 7,121만 6천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 2억 7,810만원(476만원 감소)
    -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2억 3,456만 7천원(4,166만원 감소)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억 5,391만 5천원 (3,023만 9천원 증가)
    - 예비비 289억 8,463만 4천원 (48억 6,139만 6천원 감소)
    -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49억 2,000만원(신규) 등
  - ▶ **교통지도과는** 전년도보다 144억 9,214만 1천원(152.9%)이 증가한 239억 6,978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비 10억 1,328만 1천원(248,555천원 증가)

-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사업 7억 4,892만 4천원(155,048천원 감소)
- 주차장관리사업비 3억 2,247만원(414,577천원 감소)
- 인력운영비 24억 638만원(52,170천원 감소)
- 기본경비 1억 9,601만 8천원(4,905천원 증가)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6억 8,206만 3천원(323,189천원 증가) 등

#### **IV 검토 의견**

- 201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사업비 등 의무지출경비, 경직성 경비 등의 증가로 세입대비 세출요구 규모가 대폭 상회함에 따라 부족분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필요경비를 충당하였으며,
- 이와같이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각종 과태료 등 체납 세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적립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각종 재해 예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후 도로 및 하수 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함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자원 배분의 효율적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5일(금) 마포구청장
- 위원회 회부 : 2013년 11월 19일(화)
-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 2. 기금 운용 규모

###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 계획	2013년 운용	증(△)감	증감률
도로굴착복구기금	1,746,065	1,654,679	91,386	5.5%

### 나.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1,746,065	합 계	1,746,065
도로굴착 복구기금	·예치금회수	916,125	·비용장성사업비	800,000
	·이자수입	29,940	·기본경비	3,100
	·기타 수입	800,000	·예치금	942,965

## 3. 검토결과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시행으로 차량통행과 시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17억 4,606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5%인 9,138만 6천원이 증가함.

- ▶ 수입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17억 4,606만 5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 9억 1,612만 5천원, 이자수입 2,994만원, 기타수입인 일반부담금 8억원이며,
  - ▶ 지출은 일반운영비 310만원, 굴착복구공사비 8억원, 예치금 9억 4,296만 5천원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속성과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는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부서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로 주민의 보행과 차량 통행 등 편익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집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및 근거

##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